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국토교통위원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양도, 압류 금지 등 》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88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제2210188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양도, 압류 금지 등 (안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신설)	2

I.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제2210188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4. 28.

다. 회 부 일 : 2025. 4. 2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신설).

3. 검토의견

가.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양도, 압류 금지 등(안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53조의4(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① 제53조제5항 및 제53조의2제4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53조제6항 제53조의2제5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53조의5(압류 등의 금지) ① 제53조제5항 및 제53조의2제4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5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안 제53조의4는 현행법 제53조제5항¹⁾ 및 제53조의2제4항²⁾에 따라 손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감독 등) ⑤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53조제6항³⁾ 및 제53조의2제5항⁴⁾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손해배상금⁵⁾ 청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손해배상금 수급전용 계좌”라 한다)로 손해배상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게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내용임.

안 제53조의5는 스마트혁신사업⁶⁾ 및 스마트실증사업⁷⁾ 시행 과정에서

제53조의2(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④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스마트실증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감독 등) ⑥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사업규모, 여건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적·물적 손해배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⑤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실증사업자의 사업규모, 여건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적·물적 손해배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스마트혁신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제공·이용하기 위하여 제49조에 따라 임시로 승인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등) ①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제9조의2에 따른 민간기업등을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혁신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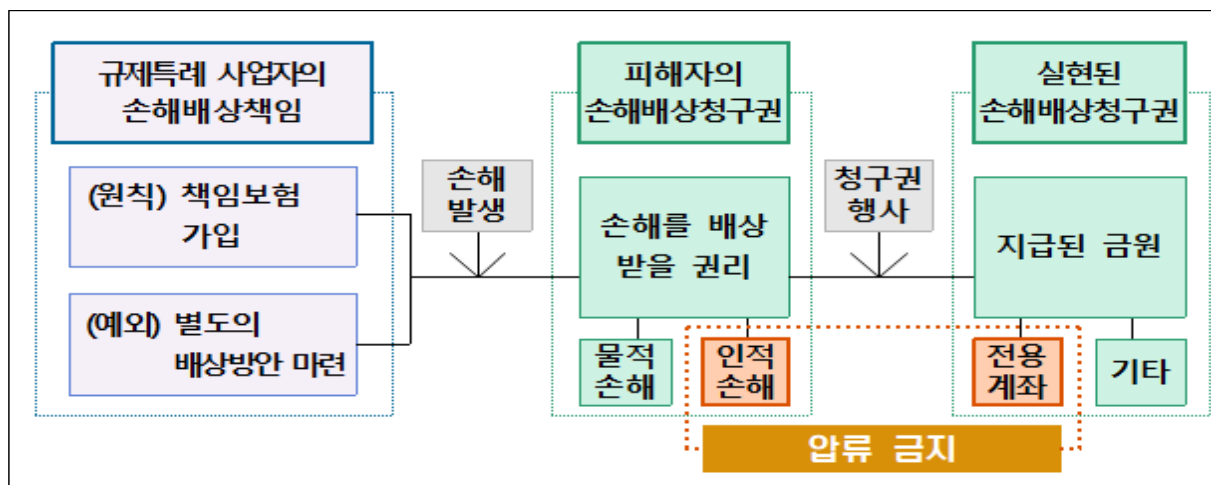
7)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하여 제50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규제외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업을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과정에서 ①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이하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한다)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②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되어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손해배상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임.

【 안 제53조의5 관련 주요내용 】



※ 자료: 국토교통부

현행법 제53조제6항 및 제53조의2제5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자 및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규모, 여건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책임보험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하위 법령⁸⁾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임.

말한다.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 ①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실증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제1항제6호⁹⁾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2024년도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¹⁰⁾에서 규제샌드박스 책임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6개 법률에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5-5호)
[별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범위

“ 재난안전의무보험 ”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2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1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이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등의 분석·평가 결과 해당 재난안전의무보험 등이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권고,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을 할 수 있다.

대한 정비를 추진하기로 확정하였으며 관련 개정안이 발의¹¹⁾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적 손해(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 포함)에 대해서는 압류 등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안 제53조의5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제31조¹²⁾에

11) 개선권고 대상 6개 법률

소관	관련 법률	개정안	
		의안번호	발의자
국토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2210188	김성원의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2210187	
과기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21019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2210191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210186	
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210189	

* 「산업융합 촉진법」의 경우 '24.10.4. 개정안 발의(의안번호 2204570, 고동진의원안)

12)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따라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1조¹³⁾에 따라 체납자가 보유한 채권에 대해 조세채권금액을 한도로 압류할 수 있는데,

납세자가 국세를 완납하지 못하여 체납한 경우 해당 손해를 받을 권리 등은 체납자가 보유한 채권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다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국세징수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압류할 필요가 있고,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서 압류금지 재산으로 별도로 규정¹⁴⁾하고 있어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

반면, 법제처는 체납자인 피해자의 생계 유지라는 입법 목적 측면에서 「국세징수법」 제41조와 동일한 측면이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41조에서는 “보장성보험”만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스마트

13) 「국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14)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영세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대해 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인 예금을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측면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혁신사업자 및 스마트실증사업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해자는 같은 법 제41조를 적용받지 못하는 점을 보완할 수 있어 개정안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1